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하여 목적 조항에 국립대학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2항 등).

II. 검토의견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전문위원 이 은 정)